

2024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경기도지사

I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II 추진개요

- (지정규모) 제한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지원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III 신청자격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관참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급여이체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요약) »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정관 등
-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상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참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 (관참은 일자리)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불인정

→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 취약계층의 범위는 [참고 5] 취약계층의 범위 및 [참고 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름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참고 7]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따름

※ 사회적 목적 유형별 세부사항은 [참고 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사회적목적 요건 상세' 참고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기준 »

- ▶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리법인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 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지정제한) 아래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IV 주요 심사내용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항목	배점	주요 내용
사회적가치 추구	25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25	• 사업내용의 구체성(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 등)
사업역량	30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
사업목표	20	•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지정절차

신청·접수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	노동관계법령 검토	심사	선정결과 공고
기업→시군	기업↔시군	시군, 지원기관 고용노동관서	전문용역기관	道 심사위원회	道
8.12~8.26.	8.28~9.6.	9.11.~10.2.	9.11.~10.10.	10.29.~10.31.	10월 말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현장실사·심사 방식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 서류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의 보완»

- ▶ (보완요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 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신청서의 반려)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 ▶ (부적격 통보)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VI 신청서류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은 ②~⑩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첨부

제출서류 항목		서식(비고)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직접 작성)		<별지 제1호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④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		<별지 제2호의2 ~ 제2호의6서식>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⑤ 정관·규약 등(공증필수)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조직형태가 법인의 경우 -정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약(운영규정)
⑥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임원 및 근로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
⑦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제출 서류에 한하여 노동관계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조건에 해당함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한 경우 위법으로 간주함 ※ ⑦-1 ~ ⑦-29 까지 합본,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시스템 등록 ※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제2호의9) 포함 제출		<별지 제2호8 ~ 제2호의9서식>
⑦-1 유급근로자 명부(전체 근로자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에서의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근로자를 작성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별지 제2호의7서식>
⑦-2 근로계약서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⑦-3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제출서류 항목		서식(비고)
⑦-4	임금대장(최근 3개월 / '24.5월~7월)	
⑦-5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24.5월~7월)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⑦-6	휴가대장('23년, '24년) ※ 연차축진제도 운영 시 관련 자료 제출 필수	5인 이상
⑦-7	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23년, '24년)	미사용 수당 지급 시
⑦-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23년, '24년)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⑦-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원클릭서비스 불가능
⑦-10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류 ('23년, '24년)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5인 이상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
⑦-11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필증 포함)	10인 이상
⑦-12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접수증 포함)	30인 이상
⑦-13	노사협의회 회의록 ('23년, '24년)	30인 이상
⑦-14	고충처리대장 ('23년, '24년)	30인 이상
⑦-15	고충처리위원명단 또는 위촉장	30인 이상
⑦-16	출퇴근 기록부 및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내역 (최근 3개월 / '24.5월~7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⑦-17	휴직자 관리대장 ('23년, '24년)	휴직자가 있는 경우
⑦-18	해고통지서 ('23년, '24년)	해고자가 있는 경우
⑦-19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 ('23년, '24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⑦-20	퇴직금 산정 내역서 ('23년, '24년)	퇴직자가 있는 경우
⑦-21	근로자파견허가증	파견업 운영 시
⑦-22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 사용 시
⑦-23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 시
⑦-24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기숙사가 있는 경우
⑦-25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15세 미만자 사용 시
⑦-26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18세 미만자 사용 시
⑦-27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⑦-28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기간설정 '23.1.1.~'24.7.31.) - (확인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⑦-29	이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기타 관련 서류	대상 사업장
⑧ E-러닝 교육이수증 확인(㉑, ㉒ 중 택1) - ㉑ 사회적기업 온라인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이수 수료증 - ㉒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 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기타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⑩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⑩-1	사업자등록증명(고유번호증 불인정)_사업개시일 2024.7월말 기준 판단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 필수 ※ 원클릭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수기등록
⑩-2	표준재무재표증명	
⑩-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⑩-4	부가세신고내역	
⑩-5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⑩-6	납세증명	
⑩-7	4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⑩-8	4대보험 완납증명서	

VII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8.12.(월) ~ 8.26.(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 ▶ 상담 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평일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불입서류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예시1)등기부등본+대표자 이력서, (예시2)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 ▶ 불입서류는 1 파일당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지정결과 통보)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VIII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 정기점검(1·3분기), 합동점검(2·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IX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연락처	구분	부서	연락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7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457
수원시	마을자치과	031-228-2274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5182-1453
용인시	민생경제과	031-324-2206	군포시	자치분권과	031-390-0940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6921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3662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082-6091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5189-3107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97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397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590-8906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5454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609	의왕시	자치행정과	031-345-2132
평택시	미래전략과	031-8024-3525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4428
안양시	고용노동과	031-8045-233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37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287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746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073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462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031-828-2372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031-580-2957
광주시	지역경제과	031-760-2671	연천군	경제교통과	031-829-2286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수원시	280-6371	의정부시	850-5842~3
용인시	337-2528	광명시	02-2680-6457
고양시	960-7875	하남시	796-7904
성남시	756-4957	군포시	462-0306
화성시	352-9400	오산시	8036-6922
부천시	032-625-2991	양주시	865-1605
남양주시	590-8906	구리시	550-2397
안산시	481-8942	안성시	678-0786
평택시	657-6051	포천시	538-4428
안양시	8045-2337	양평군	770-2639
시흥시	365-5412~8	여주시	885-5703~4
김포시	980-2748	과천시	02-3677-2464
파주시	940-5087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구내번호 1)	경기도 지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기관명	연락처	비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사회적기업 포털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메인 상단 사업신청>사회적인 인증.지정>인.지정 공고

예비(지역형)

경기도

진행중

오늘 마감

경기도 2024년도 1차 지정공모

신청기간 : 2024.3.13.(수) ~ 2024.3.27.(수)

○ 신청순서

- 사업신청하기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민중 · 지정관리 > 지정관리 >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사업지역

경기도

공모년도/차수

전체

전체

포기하기

조회

지정공모 목록 (총 1건)

순번

년도

차수

사업지역

모집기간

진행상태

상세상태

신청번호

1

2024

1

경기도

2024-03-07 13:00 ~ 2024-03-07 20:00

신규등록 클릭

- 지정신청서 등록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유급근로사명부

신청기간 기본정보

신청번호

신청사 자동생성 할 경우

사업지역/연월제/차수

경기도

전체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기업/유형 구분

예비(지역형)

공모년도/차수

2024

1

지정기간

전체

신청사정보

신청기업명(신청기업명)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직접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유형번호

신청유종

조직형태

전체

사회적경제지원형태

전체

현재 유급 근로자수(A)

유급제출 근로자수(B)

유급제출 고용비율(B/A)

0%

신청사정보

주관 사업내용

주관 사업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첨가

삭제

삭제

기업정보 가져오기

기업정보 가져오기

“임시저장” 반드시 누르기

“신청”만 누르면 등록과정 중

자료 저장 안 될 수 있어요

임시저장

신청

- 구비서류 첨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유급근로사명부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2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20MB보다 큰 파일은 업로드에서 업로드 버튼이 사라집니다.

조직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예비(지역형)사업 사업계획서/사업자 계약서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사회적 목적 실현방안을 위한 사업계획서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정관 · 규약 등(법정/기정된 제정)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정관수입 · 비용 · 제도에 관한 등기서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주주명 · 고위직수준 확인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주주명

파일첨가

파일명

파일크기

“구비서류양식다운” 받지 말고

경기도 공고문의 서식을 활용해 주세요

구비서류양식 다운

- 14 -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열기”, “원클릭구비서류 가져오기”

[원클릭 가능]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납세증명

[원클릭 불가능] 4대보험가입증명서(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임시저장” 반드시 누르기
“신청”만 누르면 등록과정 중
자료 저장 안 될 수 있어요

- 서명 후 제출

제출

제출

서명 후 제출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E-러닝 교육이수증(사회적기업 온라인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
필수교육과정

[2024년 신규 개설] 예비사회적
기업 필수과정

온라인 1차 | 정원: 무제한

신청기간: 2024.01.29~2024.12.31
교육기간: 2024.01.29~2024.12.31
조회수: 1513 * 0 (0명)

수강신청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제외	• 60세 이상인 자,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가(사업장 가입과 지역가입이 모두 제외되는 국가 21개국) -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티모르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건강보험 적용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가입 대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만 가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은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근로자부담금 없음) ※ 만 65세 이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계속 고용 중인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실업급여 모두 가입 •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및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지적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43호, 2023.8.4.)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1.1. ~ 2024.12.31.
- 2024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8시간)	월급(주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9,860원	78,880원	2,060,74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등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4년 월 급여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

$$= \{(\textcircled{1}\text{주40시간} + 8\text{시간}) \times \textcircled{2}52.14 \div 12\} \times 9,860\text{원}$$

$$= 209(208.57)\text{시간} \times 9,860\text{원} = 2,060,740\text{원}$$

※ ① 주 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 48시간

※ ② 1년은 총 52.14주(365일 ÷ 7일)

1. 근로자 개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 직종·직급, 정부사업·민간사업 등은 기준이 되지 않음

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해석함
 - 주식회사의 부장·팀장·과장 등은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음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 [1]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 [2] 임금을 목적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함

[1] 사용종속 관계

- ◆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함
- ◆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기본적인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인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2] 임금을 목적으로 할 것

- ◆ 민법상의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또는 수수료

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로 받는 경우만 근로자인 것이 아니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 형식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함

3. 참고사례

① 요양보호사

-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②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 ◆ 간병인이 환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 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 측이 되며,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까움(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 ◆ 반면에,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 제한, 출근부 작성 등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근로기준법-5557, 2006.10.10.)
- ◆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 할 수 있는 점,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간병인들은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대법 2009도311)

③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④ 무한책임사원

-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3305, 2002.11.30)

⑤ 임원

- ◆ 임원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사업경영담당자(경영자)를 말함
- 사업주(법인)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근로기준법- 861, 2006. 2. 22),

-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법- 405, 2010.3.24.)

⑥ 중간관리자

- ◆ 중간관리자는 기업조직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을 받아 부하직원을 관리하며 경영진을 보좌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중간관리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권한·책임에 비추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
 -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근기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2중적인 위치에 있음(법 제2조)

⑦ 자영업자, 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관계

- ◆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음
 -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됨

⑧ 종교단체 봉사자

- ◆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 봉사자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
 -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근기 68207-459, 2003. 4. 17)

⑨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취업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법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외국인고용법 제2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외국인고용법 제22조)

⑩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 이 경우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⑪ 학원강사

-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근기 68207-2172, 2000.7.21.)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 해당(근기 68207-3194, 2000.10.16.)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조정 여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 (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 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 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 사직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박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 직전 월 3개월의 기간임에 유의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1)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5)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을 둠

1) 사회서비스제공형

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times 100$$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나)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율을 계산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③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제도 ■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전자 바우처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기관(기관이 시·도에 등록)은 법에서 정한 수혜대상과 서비스 단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체계

마) 직업훈련기관

-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정부 지원 훈련대상자 이외에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만을 인정

* 해당 실적은 정부 지원 대상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지속적 고용알선, 취업 훈련서비스 등의 수준, 수혜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실적과 그 일자리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10> 참고 (158p)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수혜자 개인별로 일일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도록 함

2) 일자리제공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①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 협동조합 유형 중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등기임원인 경우가 있어 예외(근로자 수에 포함)

- ②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괜찮은 일자리’는 ①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형태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하되, 계절적 사업이나 경영상 일시적 고용이 필요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은 그 사유 등에 대해 위원회 검토·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판단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신청기업 사업방식(OEM 등)의 적정성 여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 ③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다) 세부기준

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

-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 * 다만, 심사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text{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6개월)}} \times 100 \quad 30\% \text{ 이상 충족}$$

예시) 2020년 7월 인증 신청한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5.33명,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40.7%로 인증요건을 충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5	4	6	5	6	6	32	5.33	-
취약	2	1	2	2	3	3	13	2.17	40.7%

②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 유급근로자가 3인 미만이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애로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평균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
 -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노력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 보고

③ 취약계층 인정기간

-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유형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 평균 3인 이상 고용 유지 여부	신청일 직전 6개월*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신청일 직전 6개월*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신청일 직전 6개월*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승인공문 대체가능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나) 세부기준

◆ 지역의 기준

- ‘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 육성전문위에서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의결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봄
- ※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가능.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

◆ 유형별 세부 인증심사 기준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 ※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성격상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부적합.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
 - ※ 사업 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은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마을기업 지정서 확인)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③ 지역사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지역사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증빙서류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취약계층(20%)을 고용하는 경우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의 유형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 취약계층의 거주지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참고1, 2>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신청월 직전 6개월*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신청월 직전 6개월*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신청월 직전 6개월*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20%)를 제공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내역(인원, 횟수, 기간 등) - 취약계층의 거주지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서식 제2호의2> 참고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한 사업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수혜기관의 사회적 경제조직 여부	수혜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4) 혼합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함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나) 세부기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5) 기타(창의·혁신)형

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육성전문위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증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 * 측정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89점), 보통(60~74점), 미흡(59점 이하)

<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세부평가항목 >

관점	범주	영역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성과 (25)	사업 활동 (2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내부운영,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정도	15
		사회적 목적 재투자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10
경제적 성과 (15)	재정 성과 (15)	매출성과	11.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	10
		영업성과	12.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4. 과정 및 결과 혁신 정도	10
계		5개 지표		50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

[예시]

- ①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잡지 판매 등
 -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과 직업훈련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 * 연주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 ②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
 - * 청각 장애인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하여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장 등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 ③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 * 3D 프린터를 활용해 장애인 개인별 사이즈에 맞는 필기 보조기구 제작(이전의 보조기구는 대, 중, 소 유형이었음)
- ④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 * 사회문제해결 브랜드를 런칭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할머니들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나) 세부기준

-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적합 여부는 육성전문위에서 결정
-